전남대 로스쿨 입학전형계획 발표

비법학·타대학 각각 40명 이상 선발

내년 3월 개원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이 정해졌다.

전남대는 26일 전체 정원 120명 중 일반전형에서는 90%인 108명,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에서는 12명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스쿨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모집시기별로는 가군에서 70명(일반전형 58명·특별전형 12명), 나군에서 50명을 뽑고 총정원 중 비법학과 출신 40명 이상과 다른 대학 출신 40명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

1단계 전형에서는 외국어·학부·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사회경력(다양성 전형) 등을 반영해 3배수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LEET 논술 및 면접 점수를 합산,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일반전형은 다시 기본전형(84명)과 사회경력자 등을 위한 다양성 전형(24명)으로 나뉜다. 기본전형과 특별전형에서는 ▲외국어 성적 20점 ▲학부성적 20점 ▲LEET 30점이, 다양성 전형은 ▲외국어성적 15점 ▲학부성적 20점 ▲LEET 20점 ▲사회경력 15점이 각각 반영된다.

다양성 전형에 반영되는 사회경력은 공인회계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관세사·법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외국변호사·외국공인회계사 등 14개 자격증 소지자와 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법원행정고시 등 4개 고등고시 합격자, 석·박사학위소지자, NGO 등 공익인권분야 경력자, 제2외국어능력 우수자,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재외국민 등이다.

외국어 성적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적용하며, 각 시험별 최저기준은 ▲TOEIC 750점 ▲TOEFL CBT 227점 ▲TOEFL iBT 87점 ▲TEPS 630점이다. 각 대학별 로스쿨 입학전형은 법학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초 확정된다. /정상필기자 camus@

중학생들 5·18묘지 참배 광주 하남중 1학년 학생들이 2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교사로 부터 80년 5·18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하남중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리는 2박3일간의 수련회에 들어가기 전 5·18묘지 참배를 일정에 포함시켰다. /위직량기자 jrwi@

이번엔…'가짜 명품' 된장·고추장

중국산 농산물로 제조 국산 둔갑 판매 나주 업체 적발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등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산 콩과 고춧가루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국산 명품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6일 중국산 콩 등 수입 농산물로 제조한 된장과 고추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나주 A업체 사장 김모(30)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업체는 경북 모 생산업체로부터 중국산 콩·고춧가루·미국산 밀 등을 사용해 제조한 된장·고추장 20t을 구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7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3대 전통의 명가, 70년 명인의 손맛'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된 된장·고추장은 1~2kg들이 상품으로 포장돼 원료의 원산지 식별이 힘들다는 점이 교묘하게 악용된 것으로 전남지원 측은 보고 있다.

또 중국산 쌀로 제조한 누룽지의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대량으로 유통시킨 광주 광산구 B식품도 유전자분석을 통해 적발하기도 했다.

전남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523건을 적발해 200명을 형사입건했고 미표시 323건을 적발, 6천94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곶감·떡류·표고버섯·고춧가루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식육점이 150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가공업체·슈퍼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지원은 이같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5월말까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

'금품수수 의혹' 광주 시립 국악단장 무혐의

단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광주 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장 이모(47)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최근 "배임 수·증재 혐의를 받은 이씨와 단원 최모(여·30)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주고 받은 300만원이 채용 대가인 지 조사했지만 두 사람이 아쟁을 대리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에 관한 대가로 볼 만한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최씨가 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으로 채용된 대가로 최씨의 남편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이를 부인해 왔었다.

한편 이 단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으로 음악에만 매진해온 개인의 명예는 물론, 단체와 단원들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졌다"며 "명예 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사건 당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국악계 원로, 변호사 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악관현악단 수·차석 단원들은 이날 광주문예회관장에게 '이 단장이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이 단장을 재위촉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부경찰 '지렁이 단팥빵' 내사 착수

광주북부경찰은 제보자의 오락가락 진술에 따라 미궁에 빠진 '지렁이 단팥빵' 사건<본보 25·26일자 7·8면>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 송모(38·남구 월산동)씨가 제보 당시 작성한 진술서와 첫날 진술을 번복한 진술서를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 실제 편의점에서 구입한 빵 속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는지 여부와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송씨가 진술을 번복하기 전 "단팥빵 제조사인 S식품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S식품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하기 전날 이미 송씨를 만났다"고 말해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봄비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3월 27일 (음 2월 20일)

◇전국날씨

광 주	비 후 갬	6~12℃
목 포	비 후 갬	7~11℃
여 수	비 후 갬	7~10℃
완 도	비 후 갬	5~12℃
구 례	비 후 갬	4~12℃
해 남	비 후 갬	4~12℃
장 흥	비 후 갬	4~12℃
고 흥	비 후 갬	4~10℃
순 천	비 후 갬	4~12℃
영 광	비 후 갬	4~11℃
진 도	비 후 갬	5~11℃
전 주	비 후 갬	4~11℃
남 원	비 후 갬	2~11℃
흑산도	비 후 갬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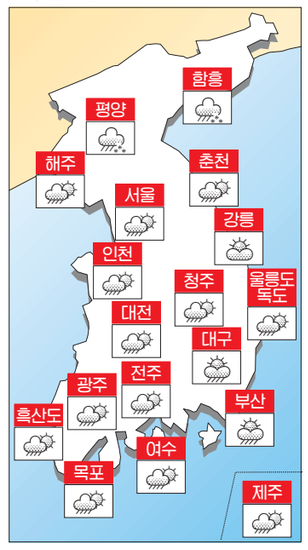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5:12 16:56 썰물〈 10:22 22:16
여 수 밀물〈 11:38 --:-- 썰물〈 05:46 17:34

▲해뜸 06:26 ▲해짐 18:50 ▲달뜸 --:-- ▲달짐 08: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금)	29(토)	30(일)	31(월)	4/1(화)	2(수)
날 씨						
최저/최고	4/15	4/18	5/19	4/20	5/20	4/18

무등산 장불재~서석대

내달 15일부터 폐쇄

다음달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무등산 장불재에서 서석대에 이르는 탐방로가 폐쇄된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 주상절리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장불재~입석대~서석대에 이르는 0.9㎞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입석대와 서석대 등으로 이뤄진 무등산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465호)의 원형 보존을 위해 지난해 7월20일부터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출입을 제한해왔다.

시는 장불재~서석대 구간이 통제되는 연말까지 30억원을 들여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1천여㎡의 식생을 복원할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

이혼소송중 혼외 성관계

"간통죄 해당 안된다"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여·44)씨와 상대 남자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데다 혼인당사자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상황이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